

#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1.19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본 학원 정관 제39조의3(정년보장교원의 심사)에 의거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가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전문개정2012.08.08.>

## 제2조 <삭제 2012.08.08.>

### 제2조의 2 (위원회 구성)<본조신설 2012.08.08.>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보한다.<개정 2019.04.17., 2022.01.19.>
- 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### 제2조의 3 (위원장등의 임무)<본조신설 2012.08.08.>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 유고시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장 직무대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2조의 4 (위원회 운영)<본조신설 2012.08.08.>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- ④ 제3항에 의한 제척 인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제척인원수를 감한수로 한다.

## 제3조 <삭제 2012.08.08.>

### 제3조의 2 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<본조신설 2012.08.08.>

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4조 (기타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개정 2012.08.08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운영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운영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운영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운영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경과조치)

- ① 이 운영세칙 시행 전에 교수로 재직 중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규정 제7조(정년보장 임용 심사대상)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정년보장 업적심사표의 연구실적 인정은 현 배점수에 40점을, 강의평가 심사 평균평점은 5점을 가산한다.
- ②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규정 제7조(정년보장 임용 심사대상) 제2항,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강의평가 심사 평균평점을 산정할 때에는 강의하는 총 교과목이3개 과목 이상일 때에는 상위 2개 과목 평균평점을 평균한다.
- ③ 정년보장업적평정심사표의 연구실적, 봉사활동, 상별란의 평정방법에 있어서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 이전의 경력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2012.08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1.19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